

(2020-3) 000 이의신청 심의결과 (' 20.3.18.결정)

□ 사실 관계

- ' 19.4.1. 승용자동차 00조0000(QM6) 취득 후 취득세 면제받음(대체취득 감면)
- ' 20.1.13. 00오0000(싼타페, 종전 감면받은 자동차) 60일 이내 말소나 이전 등록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0,000,000원 부과·고지함
- ' 20. 2. 7 신청인 이의신청 제기

□ 쟁점 사항

-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 말소 이 전하지 않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처분청 : 00시장, 부과금액 : 0,000천원

□ 신청인 주장

- 처분청에서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 처분에 관한 안내를 해 줄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추정 가산금이 발생하기 전에 고지해 줘야 하며, 또한 종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만 면제 받았지 취득세는 면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, 취득세·자동차세 각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.

□ 우리도 의견 : 기각

- 「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「지방세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(이하 “자동차세“라 한다)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,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하는 것인바,
- 종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한다면, 장애인에게 동시에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2대 허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, 매년 1대씩 취득세 없이 신규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는 감면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겠다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감면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(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-1415, 2016.6.22.)으로서,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.

